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05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6. 9.
판 결 선 고	2017. 6.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152,610원, 지방교육세 8,717,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58,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가.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원고가 [redacted] 주식회사로부터 '[redacted]시 B 외 7필지 지상 건물 중 [redacted]호 · [redacted]호 · [redacted]호 건물 975.69㎡ 및 토지 262.060㎡'를 매수하였는데, 이는 [redacted] 주식회사가 원고의 대표이사 C의 남편인 D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어서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장부가 아닌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세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서, 2015. 12. 14. 원고에게 취득세 94,152,610원, 지방교육세 8,717,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58,8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24.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2017. 1. 26. 위 각하결정을 받고서 2017.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redacted]시의 행정체제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6. 7. 4. 개편됨으로서 [redacted]시 관내 3개 구([redacted]구 · [redacted]구 · [redacted]구)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관할하던 사무는 [redacted]시장에게 승계되었는데, 이 법원은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2017. 3. 7. 이 사건 피고를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서 [redacted]시장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서 제기된 것으로서 결국 제소기간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 C이 2015. 12. 17.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갑 제2호증)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고서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1]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표이사 C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수령한 무렵

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을 전후하여 질병으로 위중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구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위에서 말하는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라 함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법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일 뿐 그 대표이사 개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법인인 원고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E병원에서 '제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mullitus, 인슐린 분비기능은 일부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한 당뇨병을 의미한다(이와 달리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당뇨병을 의미한다)]', '상세불명의 본태성(일차성) 고혈압[Other and unspecified primary hypertension, '본태성(일차성)'이라 함은 원인질환이 발견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팔 신경 장애(Branchial plexus disorders)', '상세불명의 고지혈증(Hyperlipidemia, unspecified)', '상세불명의 갑상선 장애(Disorder of thyroid, unspecified)', '상세불명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Hypothyroidism, unspecified,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아 체내에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저하되거나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상세불명의 비타민 D 결핍(Vitamin D deficiency, unspecified)', '간 기능 이상(Abnormal results of liver function)'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C이 E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16. 1. 8.부터 [redacted]병원으로 전원되어 최종적으로 진료를 받은 2017. 2. 13.까지의 기간 동안 주로 통원진료만 받은 것으로 보여 그 병세가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② 설령 C이 위와 같은 질병들로 인하여 위중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F 혹은 기타 직원들을 통하여 충분히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원고는 F이 원고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었던 상태인 이상 원고의 대표이사 C 이외에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이들이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재판장 판사 김태훈

판사 이기홍

판사 백우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끝.